##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331 제출연월일: 2024. 11. 7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 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 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(제51조제3항 후단 신 설).

법률 제 호

##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,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,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행 제51조(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제51조(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) ①·② (생 략) 발급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 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 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 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 야 하며, 그 사업장에는 안전 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 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 어야 한다. <후단 신설> -----. 이 경우 선박안전 관리증서, 임시선박안전관리증 서,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 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 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 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 박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전자문 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 다. ④ ~ ⑧ (현행과 같음) ④ ~ ⑧ (생 략)